

	산학협력단 운영 규정			문서번호	6-1-2	
				제정일	2012. 11. 08.	
	개정일	2013. 03. 01.				
	페이지	1/3	관리 부서	산학 협력단	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학협력사업과 외부연구사업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괄
2.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이행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
3. 본 대학의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
4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
5.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총장이 승인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지원팀에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산학협력단장(이하 ‘단장’이라 한다.)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, 소속인원을 감독한다.

② 산학협력단 하부조직으로 정부 등과의 산학협력계약에 의해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둔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원을 운용할 수 있으며, 이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과 본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
④ 위원장 및 보직을 가진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	<h2 style="margin: 0;">산학협력단 운영 규정</h2>	문서번호	6-1-2		
		제정일	2012. 11. 08.		
		개정일	2013. 03. 01.	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산학 협력단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5. 교외 연구비, 간접연구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산학협력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
7.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연구기관 승인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8. 예·결산에 관한 주요 사항

제6조(소집과 의결) 운영위원회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 4 장 업무분장

제9조(적용범위) 업무분장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장의 명에 따른다.

제10조(산학협력지원센터) 산학협력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단 회계관리
2.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집행
3. 산학협력단 세무관련 업무
4. 연구 및 사업 간접경비 관리
5. 취업관련 사업지원
6. 산학협력단 산하센터 지원관리
7.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업지원

제11조(예·결산서 제출) ①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한다.

②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

	<h2>산학협력단 운영 규정</h2>	문서번호	6-1-2		
		제정일	2012. 11. 08.		
		개정일	2013. 03. 01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산학 협력단

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2조(인센티브)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(연구원 포함)의 각종 산학협력활동을 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교외연구비, 간접연구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르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